

한국문학회 학술상 운영 규정 개정 건

현행	수정
<p>제 6 조(심사 범위)</p> <p>(1) 논문 : 심사대상은 전년도 8월과 12월, 당년도 4월 간행된 『한국문학논총』에 게재된 회원의 논문 중에서 현대문학 1편, 고전문학 1편을 선정한다.</p> <p>(2) 저서 : 심사 대상은 단독 저서이어야 하고, 회원이 수상 요건을 갖추어 학회에 요청할 때 심사가 이루어진다.</p> <p>제7조(예우)</p> <p>(1)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기념품을 수여한다.</p> <p>(2) 시상 결과를 회원들에게 공표하고, 대외 매체에도 정보를 제공한다.</p> <p>(3) 필요한 경우 학회 차원에서 수상자의 학술 활동에 협조한다.</p> <p>제 8 조(시상시기) : 학술상은 하계 학술대회에서 시상한다.</p>	<p>제 6 조(심사 범위)</p> <p>(1) 논문 : 심사대상은 전년도 8월과 12월, 당년도 4월, 8월 간행된 『한국문학논총』에 게재된 회원의 논문 중에서 현대문학 1편, 고전문학 1편을 선정한다.</p> <p>(2) 저서 : 심사 대상은 단독 저서이어야 하고, 회원이 수상 요건을 갖추어 학회에 요청할 때 심사가 이루어진다.</p> <p>제7조(예우)</p> <p>(1)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기념품을 수여한다.</p> <p>(2) 시상 결과를 회원들에게 공표하고, 대외 매체에도 정보를 제공한다.</p> <p>(3) 필요한 경우 학회 차원에서 수상자의 학술 활동에 협조한다.</p> <p>제 8 조(시상시기) : 학술상은 동계 학술대회에서 시상한다.</p>